

구미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 .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임신과 출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축하금 등을 확대 지원하고 이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재정비 (안 제2조)
- 나. 지원 대상을 명시 (안 제4조)
- 다. 지원 기준 및 자녀의 순서 산정에 관한 사항 정비 (안 제5조)
- 라. 지원 안내 및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 정비 (안 제6조, 제7조)
- 마. 환수 및 지원의 중단 규정 마련 (안 제8조)
- 바. 관리 대장에 관한 사항 정비 (안 제9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건강가정기본법」 제8조 및 제21조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붙임)
-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구미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구미시 출산축하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출산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산장려금”이란 출산 장려와 자녀의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2. “출산축하금”이란 출산을 축하하고 임신부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3. “지원대상 자녀”란 제4조에 따른 출산장려금 및 출산축하금(이하 “출산축하금 등”이라 한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자녀를 말한다.
4. “보호자”란 지원대상 자녀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양육하는 부모를 말한다. 다만, 사망·이혼 등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경우에는 실제로 양육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조례의 시행 이후 국가 정책에 따라 유사한 목적으로 출산축하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 ① 출산축하금 등은 지원대상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지원일까지 자녀와 보호자가 함께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지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출산축하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미혼부 또는 미혼모로부터 출생하여 양육하는 경우
2. 생후 12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입양한 경우
3. 자녀 출생 후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자녀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양육하는 경우

제5조(지원 기준)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장려금과 출산축하금을 합한 금액으로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지원금은 분할 지급한다.

1. 첫째 자녀: 100만원 이내
2. 둘째 자녀: 120만원 이내
3. 셋째 자녀: 200만원 이내
4. 넷째 자녀: 300만원 이내
5. 다섯째 이후 자녀: 400만원 이내

② 제1항에 따른 자녀의 순서는 지원대상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보호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자녀(보호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부(公簿)로 확인되는 양쪽의 자녀 중에서 친권자로 지정된 자녀)의 순서대로 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녀의 순서를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녀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1. 사망한 자녀
2. 입양한 자녀
3. 친권자 지정 후 성년이 된 자녀(보호자가 재혼한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7조에 따른 지원 신청일 이후에 한 입양, 보호자 재혼 등은 제2항에 따른 자녀의 순서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6조(지원 안내) 읍·면·동장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때 제4조에 따른 출산축하금 등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인에게 출산축하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절차) ① 출산축하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보호자는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또는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의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2. 지원대상 자녀 또는 그 보호자의 통장 사본

3. 가족관계증명서(출생신고 후 별도 신청시)

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신청인 자녀의 기본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읍·면·동장은 신청인이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 담당자 확인란에 기록 및 날인하여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그 신청서를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④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출산축하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 및 지원 중단) 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축하금 등을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지원대상자와 자녀의 전출·사망 등 변동 사항을 매월 조사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전출·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 전출 또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원을 중단하며, 전출 후 재 전입 시 지원 제외된다.

제9조(관리 대장) 읍·면·동장은 신청서 접수 대장을, 시장은 출산축하금 등 지급대장을 각각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대장은 전자문서로 관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 시 별도안내	
신청인 (대리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출산자와의 관계	휴대전화	
	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	집전화				
출산자 (산모)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	
	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	집전화				

※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가족 사항	세대주와 관계	성명	주 민 등 록 번 호 (외국인등록번호)	동거여부	주 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
	본인			[] 에 [] 아니오	
	배우자			[] 에 [] 아니오	
	자			[] 에 [] 아니오	
	자			[] 에 [] 아니오	

구미시 자체 급부	☐ 첫째 자녀	☐ 출산장려금 (이름:)	☐ 출산축하금 (이름:)
	☐ 둘째 자녀	☐ 출산장려금 (이름:)	☐ 출산축하금 (이름:)
	☐ 셋째 자녀	☐ 출산장려금 (이름:)	☐ 출산축하금 (이름:)
	☐ 넷째 자녀	☐ 출산장려금 (이름:)	☐ 출산축하금 (이름:)
	☐ 다섯째 이후 자녀	☐ 출산장려금 (이름:)	☐ 출산축하금 (이름:)

전국 공통 서비스	서비스명	출생자 성명	신청 사항	
	양육수당	※ 출생자 모두 기재	[] 가정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1. 국외출생 여부 : [] 에 [] 아니오
	아동수당		[] 아동수당	2. 복수국적 여부 : [] 에 [] 아니오
	해산급여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	
	여성장애회 출산비용 지원		[]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전기로 경감		[]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다자녀(3명이상) 도시가스료 경감		[] 출산가구 [] 다자녀(3명 이상)	고객명 : 고객번호 :
	다자녀(3명이상) 지역난방비 경감		[] 도시가스사업자명 :	고객명 : 고객번호 :
			[] 지역난방사업자명(코드) :	고객명 : 고객번호 :

급여 계좌	성명	출산자와의 관계	대상서비스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참고사항 등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회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결과 통지 방법	[] 문자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	---

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20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

접수 담당자 확인 사항 (출생신고 당일 신청 시, 가족관계담당자가 확인)	소 속		직		성 명	
	전입일	부() 모()	출생순위	()	()	째 자녀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 해당)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 장애인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참고사항	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

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

-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 받았을 경우 「구미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환수 및 중지 조치합니다.
-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아동수당법」 제2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 해산급여(출산에 따른 해산급여 지급에 한함 ※ 사산에 따른 해산급여는 별도 신청)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모 신생아 도우미서비스)과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항목	이용 목적	보유기간
해산급여 대상여부	저소득층해산급여 대상자 자격 확인	대상자격 조회 시
장애인 여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대상자 자격확인	대상자격 조회 시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서 다자녀 가구 또는 출산가구에 제공하는 각종 경감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상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보유기간 : 3년, 제공항목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고객센터, 그 밖에 필요한 정보 등, 기타 상세내용은 개별기관 홈페이지 참조)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전기료, 지역난방비, 도시가스료는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관할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 연락하여 이전 주소지 적용 건을 해지한 후 새로운 주소지로 재신청하셔야 계속 경감 적용이 됩니다.
※ 지역난방은 공급자별로 감면이 해당되지 않는 곳이 있으며 연 1회 경감요금을 정산하여 환급함
- 양육수당·아동수당 신청 시 수당을 지급받으려는 계좌주가 아동 또는 아동의 부·모가 아닌 경우,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아동 및 보육 담당공무원과 상담한 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대리신청인)	➔	접 수 읍·면·동	➔	등록, 심사, 자격 확인 시·군·구, 보건소, 한국전력, 도시가스회사, 난방공사 등	➔	선정통지 및 서비스제공 시·군·구, 보건소, 한국전력, 도시가스회사, 난방공사 등
--------------------------	---	--------------	---	--	---	---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생략

□ 「건강가정기본법」

제8조(혼인과 출산) ① 생략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모·부성권 보호 및 태아의 건강보장 등 적절한 출산·육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3. 생략

4. 태아검진 및 출산·양육의 지원

5. ~ 9. 생략

③ ~ ⑤ 생략

구미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지원하던 출산축하금을 모든 출산가정으로 확대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출산축하금 확대 지원 계획

○ 대 상 자 : 2020. 1. 1. 이후 출생아

○ 출생자수 : 연간 3,415명 (2018년도 출생아 기준)

(첫째 1,750명, 둘째 1,380명, 셋째 250명, 넷째 30명, 다섯째이상 5명)

○ 출산축하금 확대 지원사항

(단위 : 만원)

구 분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	넷째 자녀	다섯째 이후 자녀
출산 축하금	기존 금액	-	-	100	200	300
	인상 금액	90	60	40	40	40
기존 출산장려금		10	60	60	60	60
지원금 합계		100	120	200	300	400

* 출산축하금 : 시비 100%

* 출산장려금 : 도비 30%, 시비 70%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천 원)

연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구분							
세출	일반보상금	4,016,000	4,016,000	4,016,000	4,016,000	4,016,000	20,080,000
	소계	4,016,000	4,016,000	4,016,000	4,016,000	4,016,000	20,080,000
□ 총 비용		4,016,000	4,016,000	4,016,000	4,016,000	4,016,000	20,080,000

4. 재원조달 방안 : 시비

- 출산축하금 : 시비 100%
- 출산장려금 : 도비 30%, 시비 70%

(단위:천 원)

연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구분							
도비		352,200	352,200	352,200	352,200	352,200	1,761,000
시비		3,663,800	3,663,800	3,663,800	3,663,800	3,663,800	18,319,000
합계		4,016,000	4,016,000	4,016,000	4,016,000	4,016,000	20,080,000

5. 부대의견 : 없음

6. 작성자 : 건강증진과 출산지원담당 나혜미(480-4073)

소관 실·과		건강증진과
입 안 자	과 장	전 석 재
	담 당	임 명 섭
	담 당 자	나 혜 미 (480-4073)